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34 호

2018년2월20일(화)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8-55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8-56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
- 여수시 고시 제2018-5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취적리) /11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8-437호 대한민국테마여행10선 광역순환관광버스(여수노선) 운송사업자 선정 재공고 /12
- 여수시 공고 제2018-439호 도로지정 공고[소호동 926] /24
- 여수시 공고 제2018-444호 2018 여수시 준설보조원 모집 공고 /25
- 여수시 시전동 제2018-19호 공고 시전동 13통장(신기주공4단지) 공개 모집 공고 /33
- 여수시 시전동 제2018-20호 시전동 24통장 공개 모집 공고 /36

회								
람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자치분권 확산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연대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여수시가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여 수 시 장

□ 참여목적

- 자치분권의 담론 확산, 정책 어젠다 발굴,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함

□ 참여 자치단체 현황 : 28개 자치단체

(서울)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동구 (인천) 남구, 부평구, 계양구 (광주) 서구,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경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김포시, 양평군 (충남) 논산시, 아산시 (전북) 완주군 (전남) 여수시, 영암군

□ 협의회 구성

- 대 상 :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부 담 금 : 10백만원/년
 -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정책 발굴, 전국 분권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포럼, 토론회, 홍보물 제작 등 관련 제비용

□ 주요 공동협력사업 내용

-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공동 연구 추진
-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
- 전국 순회 포럼·토론회·공청회 개최
- 지방자치 우수 정책사례 공유를 위한 박람회 공동개최
-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및 홍보

붙임 1 협의회 규약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 정 2016. 1. 22.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

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

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자치분권 업무담당부서의 부서장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국·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자치분권 및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제3조 관련)

2018. 2월 현재

지 역	지 자 체 명 (2 8 개 단 체)
서울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동구
인천	남구, 부평구, 계양구
광주	서구,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경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김포시, 양평군
충남	논산시, 아산시
전남	<u>여수시</u> , 영암군
전북	완주군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2.20.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붙임 참조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63	8	국지도로	330	소1-229 봉계동 556-2도	소2-1063 봉계동 363잡	일반도로	-	여고-67호 09.05.13	
변경	소로	2	1453	8	국지도로	284	중3-42 봉계동 536도	소2-1063 봉계동 363잡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2	1063	8	국지도로	180	소1-229 봉계동 556-2도	소2-1453 봉계동 542-1전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1066	8	국지도로	125	소2-1063 봉계동 581-5전	소2-1064 봉계동 341-2도	일반도로	-	여고-6호 09.05.13	
변경	소로	2	1066	8	국지도로	137	소2-1453 봉계동 581-5전	소2-1064 봉계동 341-2도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063	소로 2-1453	○노선변경 - B= 8m, L= 284m	주민생활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노선 변경
	소로 2-1063	○노선변경 - B= 8m, L= 330m→B= 8m, L= 150m 감) 180m	소로 2-1453호선의 신설에 따른 도로 노선축소
소로 2-1066	소로 2-1066	○선형변경 - B= 8m, L= 125m → B= 8m, L= 137m 증) 12m	소로 2-1453호선의 신설에 따른 도로 연장변경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유실수 재배
2. 사업의 내용: 개간 신청지(임야)를 농경지로 조성
3. 사업의 구역
 - 위 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산172-3, 476-1번지
 - 대장면적: 17,702m²
 - 개간면적: 3,622m²
4. 사업비: 64,180,000원
5. 사업예정기간: 승인일 ~ 2018. 12.31.
6. 사업의 효과: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
7. 사업시행자: 여수시 율촌면 취적2길 65-15
유영*

2018. 2.

여 수 시 장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재공고(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20.

여 수 시 장

1. 운영계획

가. 운행개요

- 운행시기 : 2018. 3. ~2018. 12. (9개월)
- 운행대수 : 1대 (대형우등버스 45인승 이하) * 운행업체 자체 조달
- 운 행 일 : 매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 운행조건 : 5명이상 예약 할 경우 운행
- 운영방법 : 민간사업자 공모 위탁운영
- 이용요금 : 사업자 제안 및 협상 반영
- 운행코스
 - 운 영 : 1일 1회(토, 일, 공휴일) / 출발시간 : 10:00
 - 코 스 및 운행단가
 - 오전 : 이순신광장 → 오동도→ 흥국사→ 이순신전망대
 - 오후 : 이순신전망대 → 광양장도박물관→ 보성울포해변 →
순천만 국가정원 →이순신광장
 - 운행단가 : 1일 658,970원

- 서비스수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 면허종류 : 한정면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5조제 5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 재정지원
 - 공모 참가업체가 운영비 지원(버스 1대/1일) 제시
 - 지원기준 : 지원액-1일1대당 관광객수×탑승료=차액만 지원
 - 차량랩핑,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결제시스템
 - ※ 운행노선의 관광안내는 시 관광해설사가 탑승하고 그 경비는 시에서 지급
- 이용요금(안) : 사업자 제안 및 협의 반영
 - 광역순환관광버스 탑승료

성인	장애인·군인·경로	초·중·고	비고
10,000원	5,000원	2,500원	

- 시내순환관광업 면허기준(별첨2)

2. 사업자 선정

가.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8. 2. 28. ~ 3. 2.
- ※ 우편·FAX 접수는 불가
- 제출장소 : 여수시청 관광과

나. 신청자격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한 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 공고일 기준 차령 2년 이내 차량 2대 이상을 확보한 업체 또는 협약체결시까지 확보 가능한 업체

다.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 사업수행능력 및 추진의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고득점자 선정, 동점일 경우 운영 활성화방안, 관광객 유인 마케팅 및 홍보 방안 항목에서 득점이 높은 순으로 정함
- 선정된 사업자가 업체 선정 결과 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차량 확보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포기 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사업자로 함
- 사업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운영 계획 전반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하여야함.
 - 일 시 : 2018. 3. 6.(화) 14:00
 - 장 소 : 여수시 시민위원회 회의실(관광과 2층)
 - 설명방법 : 사업신청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참석 제안 설명 (PPT 자료 등 15분 이내 발표 및 질의응답)

라. 사업자 선정기준

- 시 운영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탑승객 유인 능력과 홍보·마케팅 계획 및 전담인력 확보 사항
- 사업 신청자의 경영상태 및 추진의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규 준수 여부
 - ※ 광역순환관광버스 공모심사 평가항목표(별첨 3) 참조

마. 운영업체 선정결과 : 2018. 3. 6.(화)

바. 신청구비서류

《공통 서류》

- 광역순환관광버스 공모신청서 1부 [별첨 4]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5]
- 기업신용도 평가 등급 등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규 차고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 운행 노선의 추가·노선도
-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서류》

- 기존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기타사항

- 사업신청자는 사업설명회 때 배부하는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영 관련 사업설명회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추가로 서류 요구시 응해야하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면허예정자로 결정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운송시설 미비 또는 운행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공모 신청자(업체)가 없는 경우’와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자(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공모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에 의한 공모에서도 ‘2인 이상의 유효한 공모 신청자(업체)가 없는 경우’와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자(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규정에 의거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관광과(☎061-659-3872)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광역 순환관광버스 노선별 세부일정 및 단가

○ 운행코스(안)

- 오전 : 이순신광장 →오동도→홍국사→이순신전망대
- 오후 : 이순신전망대→광양장도박물관→보성울포 해변→순천만 국가정원
→이순신광장

○ 운행단가 : 658,970원

【별첨 2】

□ 광역순환관광업 면허기준

구 분	기 준
차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대수 : 1대 기준 ▪ 차 종 : 차량 2년 이내 대형버스(사업자 선정일 기준) ▪ 좌 석 수 : 40인승 또는 45인승 ▪ 차내시설 : 협약서에 의함 ▪ 차량외부 도색 및 디자인 : 사업계획서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대표(여수, 순천, 광양, 보성) 협의 결정
운행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노선에서 추가·변경 제안 가능
운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3. ~ 2018. 12. / 9개월
면허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면허 : 1년(연장가능) - 면허기간 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면허갱신 신청
차 고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이상 확보(대당 36 ~ 40㎡)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및 영업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 수단을 갖추는 것 ▪ 차고 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는 포장을 할 것 -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별첨 3】

광역순환관광버스 공모심사 평가항목표

항 목		평 가 기 간	배 점	채 점	평 가 기 준					
합 계			100							
소 계			40							
서류 심사 (40점)	1. 이용요금 제시액(성인기준)		5		8,000원		9,000원		10,000원	
					5		4		3	
	2. 경영상태(기업신용도 평가등급)		10		AAA 등급	AA+ ~A-	BBB+ ~BB-	B+~B-	C등급	
					10	8	6	4	2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여부	2015~ 2017. 12	10		없음		1회위반		2회이상위반	
					10		8		6	
	4. 관광진흥법에 의한 위반여부	2015~ 2017. 12	10		없음		1회위반		2회이상위반	
					10		8		6	
	5. 지방세 체납 여부	접수일 기준	5		없음		1건이상체납		3건이상 체납	
					5		3		1	
소 계			60							
제안 설명 위원 심사 (60점)	6.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운영 방침 및 목표 적정성		5		수	우	미	양		
					5	4	3	2		
	7. 운행노선 구성의 적정성 (추가·변경 등 제안사항)		10		수	우	미	양		
					10	8	6	4		
	8. 관광객 유인 마케팅 전략 및 홍보 방안		10		수	우	미	양		
					10	8	6	4		
	9. 조직 및 인력구성(전담인력) - 전용회선 및 전담 상담요원 배치 등		5		수	우	미	양		
					5	4	3	2		
	10. 운행체계 적합성 - 전담기사, 차량관리, 정산 등 - 고장·사고 조치 계획		10		수	우	미	양		
					10	8	6	4		
11. 운영 활성화 방안 - 홈페이지 관리·운영 방안 -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제안 - 안내시스템 개선 방안 - 차별화된 운영전략 등		20		수	우	미	양			
				20	16	12	8			

【별첨 5】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자대표

- 성 명 :
- 주 소 :

2. 사업현황

- 주사무소 :
- 법 인 명 :
- 주 업 종 : ○ 회사설립일 :

3. 평가항목별 내역

가. 운영비 지원 제시금액

업 체 명	운영비 지원 제시액(1대/1일)	평균금액
	원	

나. 이용요금 제시액

업 체 명	이용요금 제시액(성인)	비고

다. 경영상태(기업 신용도 평가 등급)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신용정보업자가 발행 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라. 법규 준수사항

구 분		계	2017.12월	2016년	2015년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 횟수				
관광사업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위반 횟수				
지방세 체납 건수					

마. 운행예정 차량내역

구 분 \ 연식별	계	2017년식	2016년식	2015년식
수 량				
기종·연식				
차량특수시설 내역				
승 차 정 원	명	명	명	명
구 입 가 격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바. 차고지 및 운송부대 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 주 사무실의 현황 :
- 차고지 현황 :
- 차고의 정비 및 세차시설 확보 현황

사. 운영업체의 조직도 및 직원현황

4. 광역순환 관광버스 운영계획 및 개선 방안

가. 2018년 광역순환 관광버스 운영계획

- 운행노선
 - 기존 노선에서 추가, 변경 가능
- 관광객 유인 마케팅전략 및 홍보 방안

- 운행체계
 - 차량운행(전담기사, 차량관리, 정산, 차량세차 등)
 - 비상시 대체인력, 대체차량
 - 고장·사고·이용자 부상시 처리방안, 기사 친절교육 등

- 차량외부 도색 및 디자인

나. 시티투어 운영개선 방안

- 홈페이지 관리·운영 방안
- 서비스 개선방안, 프로그램 제안(계절별, 축제, 이벤트 등)
- 예약 및 안내시스템 개선방안
- 운영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운영전략

- ※ 사업계획서에는 아래 서류의 내용과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 ▶ 경영상태(기업신용도 평가 등급)
 - ▶ 운행예정 차량내역
 - ▶ 차고지 및 운송부대 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
 - ▶ 운영업체 조직도 및 직원 현황 등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호동 926번지 외 1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128.0m	-	612.0m ²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소호동	995	-	-	29.0m ²	2017년 제5회 여수시건축위원회 심의 (도로지정 심의 소호동 995 외 5필지, 434m ²)	
“	976	-	-	180m ²		
“	977	-	-	23m ²		
“	978	-	-	26m ²		
“	산102-4	-	-	4m ²		
“	산102-2	-	-	172m ²		
“	926-5	-	-	107m ²	도로지정 동의서 첨부	
“	926	-	-	81m ²		
이 하 빈 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20.

여 수 시 장

2018 여수시 준설보조원 모집 공고

2018 여수시 관내 우수받이 및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준설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여 수 시 장

I. 모집요강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인원	수행업무
준설보조원 (기간제근로자)	하수도과	4명	하수도 시설 준설 및 정비

2. 근로기간 : 2018. 3. 20. ~ 2018. 11. 19. ※ 채용일정에 따라 근로시기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수준 : 63,200원/일

※ 기타사항은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준함

4. 근무시간 : 주 40시간(5일), 1일 8시간

5. 응시자격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다. 공고일 전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고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라. 하수도 준설 경력자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6. 모집일정

가. 공고기간 : 2018. 2. 20. ~ 2018. 3. 6.(14일간)

나. 접수기간 : 2018. 3. 7. ~ 3. 8.(2일간)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3. 13.(목) 이후

라. 면접심사 및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시 홈페이지)

II.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III. 제출서류 【붙임】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사진 2매 : 3.5×4.5cm)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바. 자격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경력(자격) 인정안함

※ 양식은 우리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에서 내려 받아 작성 가능함

IV.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8. 3. 7.(수) ~ 3. 8.(금) 18:00까지(근무시간 내)

나. 접 수 처 : 여수시 여문2로 124(여수시 문수청사) 하수도과사무실

다.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만 가능

V.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구시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여문2로 124(여수시 문수청사) 하수도과사무실(☎ 061-659-49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뒷면>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 ① 연 락 처 : 상시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 ② 최종학력
 - 졸업연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으로 전공구분이 없을 경우 전공은 기입하지 않아도 됨
- ③ 주요경력 : 근무경력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신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 후 반환
 2. 경력증명서 각 1부(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 ※ 첨부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붙임 1-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쪽)

<필수>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취 득 일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기타실적, 능력 등)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 여부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여부는 해당항목에 ‘○’ 로 표시 후 증빙자료 첨부

자기소개서

(2쪽)

○ 주요내용(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

반드시 작성,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좌우명,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 자신의 생각 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
이용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18. . .

성 명

(서 명)

여수시장 귀하

통장 모집 공고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대상

- 대 상 : 시전동 13통 통장 ※ 관할구역 : 주공아파트 401동 ~ 404동, 상가 2동

2.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관할구역 통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입주자 회의 등에서 선출된 사람이거나 해당 통에 거주하는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역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3. 통장의 임무

- 통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통을 대표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 등 동향 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작업 등 지원

4. 임 기 : 2018. 3. 16. ~ 2020. 3. 15.(2년)

5. 모집(신청) 기간 : 2018. 2. 20. ~ 2. 26.(7일간)

6. 제출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서(회의록 포함) 또는 지원신청서, 주민추천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7. 제출처 및 기타 문의 : 시전동주민센터 문경환(☎659-1603)

2018. 2. 20.

시 전 동 장

[별지 제3호 서식]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시전동 ()통장						
사 진 (3×4cm)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현재(년) (해당 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여수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 시전동장 귀하

- ※ 첨부 :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통장 모집 공고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대상

○ 대 상 : 시전동 24통 통장

※ 관할구역 : 신기동 119-1~13, 118-1~18, 116-1~12, 117-1~12, 118-1~16, 119-1~13

2.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관할구역 통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입주자 회의 등에서 선출된 사람이거나 해당 통에 거주하는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역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3. 통장의 임무

- 통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통을 대표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 등 동향 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작업 등 지원

4. 임 기 : 2018. 3. 19. ~ 2020. 3. 18.(2년)

5. 모집(신청) 기간 : 2018. 2. 20. ~ 2. 26.(7일간)

6.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추천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7. 제출처 및 기타 문의 : 시전동주민센터 문경환(☎659-1603)

2018. 2. 20.

시 전 동 장

[별지 제3호 서식]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시전동 ()통장					
사 진 (3×4cm)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현재(년) (해당 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여수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 시전동장 귀하

- ※ 첨부 :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